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정재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9
----------	------

발의년월일 : 2020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정재웅 의원(1명)

찬 성 자 : 이상훈, 홍성룡, 박상구,
김재형, 김제리, 김종무,
노식래, 고병국, 김정태,
강대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18.12.18. 개정, '19.12.19. 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된 가운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주체 (안 제10조, 제11조)
- 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안 제12조)
- 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3조~제16조)
- 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7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 있는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11조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

2.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 수상자

② 시장은 공모의 방법으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공모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8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적용대상
2.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3.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4. 기타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①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건축과정에 참여한 설계자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시장등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공사시행계획

6.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재,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등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2. 영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12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시장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한다.

②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요청자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단,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

도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활용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

- ④ 시장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13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간사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준을 따른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건축기획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제11조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제17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자치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직, 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는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연구·개발), 제6조(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역량 있는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제9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방안), 제10조(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제11조(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12조(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수행), 제13조(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의 설치), 제17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에서 비용 발생 요인이 있음
 - 단 제6조(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11조(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수행 등)은 기 추진중에 있으며, 제8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은 관련내용 기준을 제정하였고, 제7조(역량 있는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은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여 기 추진중에 있음. 제17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는 직접 수행 중이어서 이번 추계에서 제외함 [기 추진사업은 붙임 서류 참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연구·개발), 제9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방안), 제12조(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수행), 제13조(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의 설치)의 비용을 추계

나. 전제

- 본 조례의 각 조항은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무관하게 추진하여야 하나, 각 규정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제정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함
-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상당부분이 시장의 재량사항이나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그밖에 사업규모 확대,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 라. 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제공 자료 및 의견을 토대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5년간 **33억 91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6억 78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연구 개발 용역	88,000	-	-	-	-	88,000
	설계의도 확인 용역	538,160	538,160	538,160	538,160	538,160	2,690,800
	공공건축 사전검토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공공건축심의위 원회 운영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162,000
	소계(b)	748,560	660,560	660,560	660,560	660,560	3,390,800
□ 총 비용(b-a)		748,560	660,560	660,560	660,560	660,560	3,390,8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연구·개발(안 제5조)
-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방안(안 제9조)
-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수행(안 제12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

2. 세부추계내역

가.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연구·개발(안 제5조)

- 용역의 횟수 : 1회/5년(도시공간개선단 의견 수렴)
- 용역의 규모(금액) : 88,000천원/건
 -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016년도에 수행한 사례 참조
 - ‘공간환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용역비 79,000천원을 기준으로 약 10% 상향하여 반영

나.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방안(안 제9조)

- 연간 소요 금액 : 대상 설계용역 규모 × 적용 비율
 $6,727,000\text{천원} \times 8\% = 538,160\text{천원}$
- 대상 설계용역의 규모 추정 : 6,727백만원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2개년 실적('17년 8,124백만원, '18년 5,330백만원)의 평균을 적용
- 필요비용(용역비) 비율의 추정 : 대상 설계용역비의 8% 적용
 - 도시공간개선단의 설계비 효율 방식 8%를 반영

다.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수행(안 제12조)

- 연간 소요 금액 : 대상 건수 × 건당 소요 비용

$$60\text{건} \times 1,500\text{천원} = 90,000\text{천원}$$

- 대상 건수의 추정 : 60건/년
 - 서울시의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의 용역비 1억원 이상인 건수의 평균이 56건을 토대로 도시공간개선단 의견 적용
- 건당 소요 비용의 추정 : 1,500천원/건
 - 건당 2인이 2일간 검토 기준 적용
 - 1명당 1일 인건비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을 토대로 350천원을 적용
 - 그밖에 자료복사비 등으로 건당 100천원을 반영함(도시공간개선단 자료)

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

- 연간 소요 금액 : 회의 개최수 × 1회 당 회의 비용
$$24\text{건} \times 1,350\text{천원} = 32,400\text{천원}$$
- 회의 개최수의 추정 : 2회/월(도시공간개선단 자료)
- 회의 1회 당 소요 비용의 추정 : 1,350천원/건
 - 외부위원은 5명으로 봄
 - 회의 참석수당은 2시간 이상의 경우인 1명당 150천원, 사전검토비용은 1명당 100천원을 적용함
 - 그밖에 자료복사비 등으로 회의 당 100천원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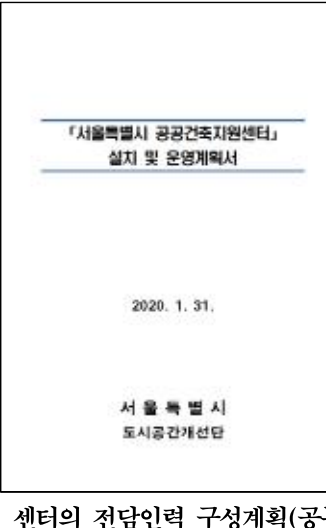

[붙임 1] 조례안 관련 기추진 사업의 사업비 예산(2020년)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내용	소요예산
제6조(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전문인력의 양성)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통한 지역 풍경 및 커뮤니티 향상 신진 건축가 발굴 및 육성토대 마련	110,000
	<산출근거>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	21,000
	공공건축가 선정 및 세미나 개최	=	29,000
	선정위원회 개최	=	2,000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	6,000
	교육세미나 개최	=	21,000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지원 및 주요 공공건축물 홍보	=	60,000
제11조(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수행 등)	자체 공간기획	사업부서나 시장단의 요청에 따른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상시 기획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업무 수행	263,000
	<산출근거>		
	민간전문가 협업 건축기획	=	35,000
	기획 관련 자문단 운영	=	28,000
	발굴사업 기획심화를 위한 용역	=	80,000
	타당성 조사 수수료 (서울 대표도서관)	=	120,000

자료 : 2020년 도시공간개선단 예산 사업별설명서

[붙임 2] 조례안 관련 기 제도화된 사업내용(2020년)

구분	기 추진 증빙 자료																									
제7조(역량 있는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p>Seoul City Ordinance No. 111 (2020. 1. 15.) 건축사 역량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령</p> <p>서울특별시 주택본부</p>	역량 있는 건축사(공공건축가) 지원 계획																								
제8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p>Seoul City Ordinance No. 111 (2020. 1. 15.) 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령</p> <p>서울특별시</p>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개정안 통보 공문																								
제17조(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치)	 <p>『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서』</p> <p>2020. 1. 31.</p> <p>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발단</p>	 <p>○ 설치목적: 공공건축 지원센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분</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인건비</td> <td>인건비</td> <td>인건비</td> <td>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td> </tr> <tr> <td>2. 인건비</td> <td>인건비</td> <td>인건비</td> <td>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td> </tr> <tr> <td>3. 인건비</td> <td>인건비</td> <td>인건비</td> <td>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td> </tr> <tr> <td>4. 인건비</td> <td>인건비</td> <td>인건비</td> <td>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td> </tr> <tr> <td>5. 인건비</td> <td>인건비</td> <td>인건비</td> <td>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td> </tr> </tbody> </table> <p>○ 예산 및 사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예산 500억 원(2020년 예산) - 운영 인건비 예산 50억 원(2020년 예산) - 인건비 예산 50억 원, 인건비 예산 50억 원, 인건비 예산 50억 원 - 인건비 예산 50억 원, 인건비 예산 50억 원, 인건비 예산 50억 원 	구분	구분	내용	비고	1.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3.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4.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5.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구분	구분	내용	비고																							
1.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3.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4.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5.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센터의 전담인력 구성계획(공무원 직접 수행) 내용																										